

2005. 6.

條例案審查報告書

○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	2005. 6. 7	2005. 6. 9	2005. 6.27	2005. 6.27	경제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1) 제안이유

-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확대,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
-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) 주요내용

-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4조 내지 제7조)
-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이전 기업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급의 요건을 정함(안 제10조)
- 지원기준에 의한 정상토지가격·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방이전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외에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 내지 제14조)

-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, 사후관리, 정산보고, 이행여부 확인 등의 기준을 정함(안 제15조 내지 제18조)
-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건당 최고 시비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
-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고 또는 정상 임대료·분양가 차액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지원 외에 교육훈련보조금,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, 안 제24조)
-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
-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·폐업, 부정한 방법의 지원 등에 해당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)
-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투자유치 성공 보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)
-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·투자비 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분양 등 계약체결이 지원기준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시한 날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토록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제정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국내기업의 충주 이전에 있어서는 국·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-101호(2004.10.11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(2004.11.26)에 의거 입지보조금, 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- 아울러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와 제14조의2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
-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사항도 포함시켜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부각시키고, 제2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에 우수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본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예상 되는바 국·도비 지원 확보방안과 별도의 기금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- ▶ 질의 : 산업단지에 입주된 업체도 해당되며 기업도시와의 상관관계는?
- 답변 : 이미 입주된 6개 업체가 해당되며 기업도시와는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·도비를 포함 지원하는 것임.
- ▶ 질의 : 고용보조금은 매달 지급하나?
- 답변 :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50만원 이하로 매달 지급하며 국비 50%, 도비 25%, 시비 25%의 범위로 지급함

5. 심사결과

-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-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1부. 끝.